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86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이정문·조승래·김용만

문진석 • 이학영 • 채현일

문금주・박 정・임광현

이연희 · 홍기원 · 김원이

김영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,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고,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,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"통보"를 "조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송부한 보험사고 관련 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한 자료를 고발일 또는 수사의뢰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해당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보험회사로부터 고발 또는수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

뢰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-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·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<u>통보</u>)	제6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<u>조치</u>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	②
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	
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	
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	
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이 경우 보험회사는
	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
	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사실
	을 수사기관에 송부한 보험사
	고 관련 자료와 함께 금융위원
	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
	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
	사의뢰를 한 경우 보험사기행
	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
	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제2항에
	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한 자료
	를 고발일 또는 수사의뢰일부
	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
	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해
	당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구를 받은 보험회사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보험회사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
-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 사의뢰를 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- 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·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